

# 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  
제 3312호  
2015. 9. 21.(월)

함께  
서울



**목 차**

◆ 구 고 시

제2015-112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..... 1

**구 고 시**

◆ 강동구고시 제2015-112호

**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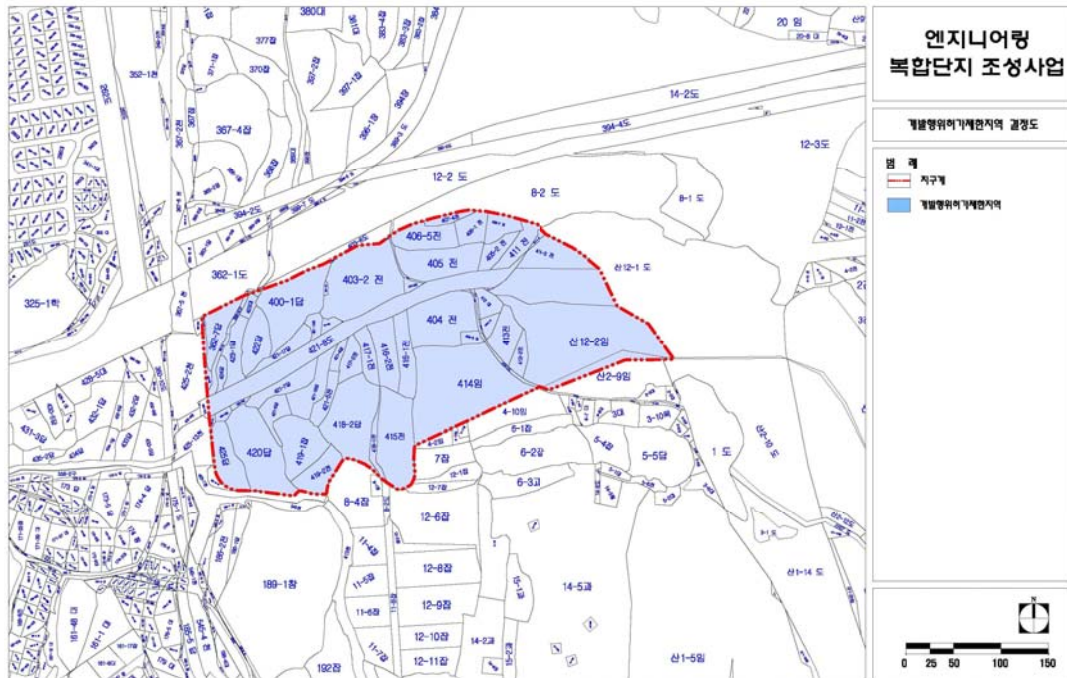
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21일  
강 동 구 청 장

1. 제한지역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(90,407㎡)
2. 제한기간
  - 당 초 : 2012. 9. 20 ~ 2015. 9. 19.
  - 연 장 : 2012. 9. 20 ~ 2017. 9. 19.

(단,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·고시되는 경우 계획(변경)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)
3. 제한사유 :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·지구 또는 용도구역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,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실 및 국가적 자원낭비를 줄이는 한편 향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
4. 제한근거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제1항 제3호
5. 제한대상 행위
  -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(용도변경 포함)
  - ② 토지의 형질변경(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)
  - ③ 토석의 채취
  - ④ 토지분할
  -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  - ⑥ 기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
6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 비치)
7. 열람장소 :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(☎02-3425-6022)
  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 개발행위허가 제한(기간연장)지역 결정 지형도



※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

# 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									
	람								